

공동주택 화재 대피방법(4종) 교육안내서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그 중심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목 차

화재 대피방법 알기 전, 생각해보기	5
---------------------	---

1. 공동주택(4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7
------------------------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13
-------------------------	----

3. 공동주택(29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21
-------------------------	----

4. 공동주택(30~49층) 화재 대피방법	25
-------------------------	----

붙임 : 공동주택 화재 대피방법(4종) 홍보안내문	31
-----------------------------	----

본 교육안내서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유형별 화재 대피방법을 사전에 교육하여,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초기의 화재상황 판단과 적절한 행동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제작 목적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이 하는 교육입니다’. 소방관들의 많은 경험도 표준화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 교육안내서가 일선의 화재 대피방법 교육의 표준화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의) 본서의 내용은 예측, 예단이 곤란한 화재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대내·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사 및 재판 등에 사용할 수 없음(업무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

화재 대피방법 알기 전, **생각해보기**

1.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만 하면 돼 ~, (함께)

● (평소) 공동주택(APT)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 ① **입주자** : 세대 내 화재요인을 제거하고, 시설을 관리에 관심을 갖는다.
 - ▶ 세대 내 감지기 및 헤드, 세대 밖 옥내소화전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② **관리사무소**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 **철저히** 한다.

2. 화재진화는 **소방관**만 하면 돼 ~, (다 함께)

● (만약) 공동주택(APT)에 화재가 발생하면, (최우선, 119신고)

① **입주자**

- ▶ 작은 불인 경우,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빨리 진화한다.
- ▶ 화재대피 안내방송에 따라 빨리 대피한다.
- ▶ 화재대피 시 세대 현관문과 계단 방화문을 잘 닫고 대피한다.

② **관리사무소**

- ▶ 화재대피 안내방송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 실시한다.
- ▶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는지 빨리 확인하여 조치한다.
- ▶ 화재가 발생한 곳을 빨리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진화한다.
- ▶ 공동주택 정문 및 후문, 통로 상의 차단기와 바리케이트를 전부 개방하고, 안내 인원을 배치하여 소방대를 화재장소로 정확하게 안내한다.
- ▶ 공동주택 내 차량을 미리 통제하여 소방대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소방대의 화재진화 활동에 필요한 정보, 인력, 장비를 지원한다. (요청시)

3. 소방차는 **언제나 7분 내 도착해** ~, (아닙니다)

● (일반) 7분 내 소방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 ① **입주자** :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율 생존능력 필요)
 - ▶ 입주자 등이 주치를 잘못해서 7분 내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② **관리사무소** : 자체적으로 대피 안내 및 대응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 ▶ 소방대를 잘 안내하지 못해서 7분 내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 현재, 119안전센터가 여러분과 가까운 거리에 모두 있지는 못합니다.

1. 공동주택(4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핵심어 큰소리, 연기의 방향, 지상

- 타는 냄새, 연기, 화염 등 인지 : 화재발생을 주변에 큰소리로 알리고, 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상으로 대피할까? 옥상으로 대피할까?

[판단보충]

① 화재충(○충)을 정확히 인지했는가?

- ▶ 화재충을 다시 확인한다. (계단과 창을 통해, 연기의 방향 등을 확인)

② 자신이 판단한 대피방향이 맞는가?

- ▶ 틀렸으면, 즉시 수정한다. [**A 지상 B 옥상 C 비상대피(탈출)**]

(참고) 연기의 이동속도 : 수평 이동 0.5~1m/s, 수직 이동 2~3m/s, 계단실 이동 3~5m/s ※ 보행속도 1~2m/s

(참고) 초기 화재감지를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자율 설치 및 사용법 교육
※ 비용저렴(만원미만), 설치 및 관리용이(직접설치, 이전가능 등)

[참고] 단독경보형감지기(예시)



- 형 식 : DC3V 광전식 2종 보통형 비방수형 재용형 비촉적형
공청측정시간 10초 (연기식 감지기)
- 전 원 : DC3V 리튬건전지 (건전지 수명 10년)
- 경보음량 :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85db 이상
- 기 타 : 동작점검 및 정지스위치 LED, 화재발생경보용 스피커, LED 표시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핵심어 지상, 필로티(pilotti), 드라이비트, 옥상,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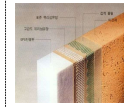
① 최우선적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1층 필로티(주차장) 화재는 가장 빨리 대피해야 한다.

(참고) 화재진행 : ① 차량 등 연소 ② 천장 마감재 ③-A 외벽(드라이비트)
or ③-B 내부계단 ④-A 창문 or ④-B 현관문 ⑤ 세대 내부로 확대

(참고)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된 공동주택[15.1.이전(6층 이상), '19.11.이전(3층 이상)]은 다른 대상보다 더 빠른 대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참고] 드라이비트(Dryvit) 공법



- 개 요 : 미국 Dryvit사에서 개발한 외단열공법 및 그 상품
- 주요구성 : 마감재, 접착물탈, 표준 유리섬유망, 고강도 유리섬유망, EPS단열판
※ EPS단열판 : 일반적인 '스티로폼'(유기단열재)임 → 불연재(×)
- 장 점 : 경제적, 시공이 간편, 유지보수 간편, 보존효과 높음
- 단 점 : 화재에 매우 취약, 벽면이 떨어질 수 있음

[판단보충]

A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대피를 지체했는가?

- ▶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 대피하면서,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알린다)

[심층판단] 화재를 진화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빨리 판단한다.

- ① 불길의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인가? ② 소화기 등이 바로 보이는가?
(주의) 소화기 사용(약 10~12초 방사) 후 진화되지 않으면, 즉시 대피한다.

B 세대 현관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 정확히 닫고 대피한다.

(참고) 출입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 등)을 손등으로 접촉해서(뜨거우면?), 문밖의 화재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급격한 문개방 주의)

C 1층 공동 현관문(자동문)은 바로 열리는가?

- ▶ 닫혀 열리지 않는 경우(구형 자동문) *신형 : 축전지로 60분간 정상 작동
① 자동문 상부(왼쪽 안) 전원버튼 OFF ②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밀어서(문 열리는 방향) 개방 ※ 정전 시는 별도 조치 없이 바로 밀어서 개방

[심층판단] 1층 필로티(주차장)에서 차량 등이 타고 있는 경우

● 계단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한가?

- ▶ 가능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대피한다.
- ▶ 불가하다. (가장 빨리 세대 현관문을 정확히 닫고, 생존환경 및 비상탈출 공간을 확보한다)

[참고] 의정부 대평그린아파트 화재



- 발생일시 : '15.01.10. 09:27
- 인명/재산피해 : 130명(사망 4, 부상 126) / 재산피해 : 90억원(추산)
- 화재원인 : 1층 주차장에 있던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배선단락 추정)
- 이슈요인 : 필로티 구조와 불에 취약한 외부마감재(Dryvit)의 급격한 연소 확대
※ 필로티 구조 : 통풍이 잘되어 화재 시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걸림

②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한다.

【판단】 옥상 대피가 가능한가?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판단보충】

㉠ 옥상 출입문은 바로 열리는가?

▶ 항상 열리는 경우, 옥상이 가까우면 바로 대피한다.

㉡ 옥상 출입문을 열쇠로 열어야 하는가?

▶ 열쇠가 없으면, 옥상으로 (절대) 대피하지 않는다.

(주의) 열려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대피는 매우 위험하다.

㉢ 계단 최상층이 기계실인가, 옥상 출입문이 바로 있는가?

▶ 기계실이면, 옥상으로 대피하지 않는다.

▶ 기계실을 경유해서 옥상 출입문이 있다면, 옥상으로 대피하지 않는다.

(참고) 옥상 출입문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피 시 위험이 있음

㉣ 옥상 출입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옥상 출입문을 잘 닫아(잠금 금지*), 옥상 대피공간의 안전을 확보한다.

(*추가 대피자의 대피와 소방관의 구조활동을 위해 옥상 출입문은 절대 잠그지 말아야 한다)

③ 뜨거운 화염으로 대피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 내 창문이 있는 곳으로 임시대피 후 구조 때까지 대기(또는 비상탈출)한다.

【판단】 화염이 보이는가, 연기가 짙고 뜨거운가?

【판단보충】

㉠ 계단에 화염이 보이는가, 연기가 짙고 뜨거운가?

▶ 화염이 보이면서 뜨거우면, 대피하지 않는다.

(세대 현관문을 정확히 닫고, 생존환경 및 비상탈출 공간을 확보한다)

【참고】 연소(고온체)의 색깔과 온도

■ 담압적색	522℃	■ 암 적 색	700℃	■ 적 색	850℃	■ 휘 적 색	950℃
■ 황 적 색	1,100℃	■ 백 적 색	1,300℃	■ 휘 백 색	1,500℃		

㉡ 세대 내 대피장소에는 외기 창문이 있는가?

▶ 반드시, 외기(바깥의 공기) 창문이 있는 곳으로 대피한다.

(화장실, 창고 등 창문이 없는 곳으로는 대피하지 않는다)

핵심어 이웃집, 우리집, 젖은 수건, 문, 창, 비상탈출

이웃집, 1층 필로티(주차장) 화재인 경우

① 젖은 수건 등으로 코, 입을 가린다 : 연기(유독가스)로부터 신체 보호

【판단보충】

● 물과 젖은 수건 등이 있는가? / 숨수건? / 화재용 마스크?

▶ 젖은 수건이 마른 수건보다 연기를 거르는데 더 효과적이다.

▶ 실내 대피 후, 호흡 시에는 특히 농연(아주 짙은 연기)과 열기에 주의한다.
(화재용 마스크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위급상황 시 생존환경을 더 확보 할 수 있다. 15분 이내 사용 권장)

【참고】 화재용 마스크(예시)



- 주요구성 : 두건, 두건렌즈, 머리끈, 정화통 몸체
- 정화통 성능 : 프로페닐,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사이클로hex세인, 이산화황(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정화 * 15분 이상 사용
- 사용조건 : 산소농도 17% 이상인 곳에서만 사용 * 유효기간 : 5년

② 현관문, 창문, 방문을 닫는다 : 화재확대 방지 및 긴급대피공간 확보

【판단보충】

● 현관문, 창문, 방문은 확실히 닫았는가?

▶ 모든 문은 확실히 닫고, 개방된 부분이 있으면 폐쇄한다.

(참고) 문을 닫으면 화염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음

③ 화염으로부터 멀리 창문이 있는 곳으로 대피 후, 창문을 열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생존환경 및 비상탈출공간 확보

【행동】 구조 때까지 열, 연기 유입 최대한 차단 조치 / 비상탈출 준비

【판단보충】

㉠ 화재가 발생한 부분(○층, 세대 전면, 후면)을 인지했는가?

▶ 연기 등이 창문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피장소(방, 공간)를 정한다.
(전면이면 → 후면, 후면이면 → 전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등)

㉡ 대피장소에는 외기 창문이 있고, 안전한가?

▶ 틀렸으면, 바로 수정한다. (안방, 작은방, 발코니)

㉢ 외기 창문을 열어, 구조 요청을 했는가?

▶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연기, 화염 등을 확인하면서 창문을 조심히 연다.

3. 세대 내 대피(비상탈출)방법 (* 법적 피난시설이 없음)

- ▶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구조 요청한다.
(휴대폰이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린다)
- ㉠ 방문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는가, 위급한 상황인가?
 - ▶ 방문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젖은 수건, 옷, 이불, 청테이프 등으로 최대한 유입을 방지한다.
 - ▶ 긴급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닫은 문은, 실내 위급상황을 제외하고 함부로 열지 않는다. (문이 뜨거운 경우, 물이 있다면 문을 물로 적신다)
 - ▶ 위급상황을 대비, 간이 로프, 커튼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비상탈출을 준비한다.

우리집 화재인 경우

- ① 젖은 수건 등으로 코, 입을 가리고, 자신의 방문(또는 불이 번지지 않은 방으로 대피 후)을 빨리 닫는다 : 신체보호 및 긴급대피공간 확보

【판단보충】

- 방문을 빨리 잘 닫았는가? / 방화담요(포)?
 - ▶ 가장 중요한 것은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다.
(만약, 불이 번지지 않은 방으로 불길 속을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 물을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 채 빠르게 이동한다)
- 물과 젖은 수건 등이 있는가? / 숨수건? / 화재용 마스크?
 - ▶ 젖은 수건이 마른 수건보다 연기를 거르는데 더 효과적이다.
 - ▶ 실내 대피 후, 호흡 시에는 특히 농연과 열기에 주의한다.
(만약, 화재용 마스크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위급상황 시 생존환경을 더 확보할 수 있다. 15분 이내 사용 권장)

【참고】 방화(소방)담요(예시)



- 재 질 : 특수처리된 유리섬유 (0.43T)
- 사 이 즈 : 1.0m×1.0m / 1.2m×1.8m
- 용 도 : 초기화재 진압 및 비상탈출용
- 적용온도 : 550℃ 이상

- ② 창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 후, 창문을 열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생존환경 및 비상탈출공간 확보

【행동】 1. 구조 때까지 열, 연기 유입 최대한 차단 조치

2. 대피상황이 매우 위급한 경우, 로프, 커튼 등 활용 비상탈출 실시

【판단보충】

- 외기 창문을 열어, 구조 요청을 하였는가?
 - ▶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구조 요청한다.
(휴대폰이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린다)
- 방문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는가, 위급한 상황인가?
 - ▶ 방문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젖은 수건, 옷, 이불, 청테이프 등으로 최대한 유입을 방지한다.
 - ▶ 긴급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닫은 문은, 실내 위급상황을 제외하고 함부로 열지 않는다. (문이 뜨거운 경우, 물이 있다면 문을 적신다)
 - ▶ 위급상황을 대비, 간이 로프, 커튼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비상탈출을 준비한다.
(만약, 간이완강기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위급상황 시 생존환경을 더 확보할 수 있다. 1회용으로 재사용 금지)
 - ▶ 대피상황이 한계를 넘어 매우 위급한 경우, 신중하게 비상탈출을 실시한다.

4. 화재대피 후 준수사항

핵심어 신고, 재 진입금지

- 모든 인원이 대피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피 후에는 절대로 화재 발생 건물 안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미리 약속한 장소로 대피한 후 보이지 않는 인원이 있으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정확한 내용을 빨리 알린다.
(참고) 귀중품, 반려견(묘) 등을 가져오려고 다시 진입하는 사례가 있음
- 대피 후에는 대피자 인적사항(동호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소방현장지휘소 등에 알리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현장통제에 따른다.
- 안내 : 이재민 발생 시 시·군청에서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핵심어 대피 안내방송, 지상, 연기, 창

- 화재대피 안내방송 : 화재층(○층) 위치를 정확히 듣고, 자신의 위치(화재 상부층, 하부층)를 판단 후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금 몇 층에 있는가? / 지상으로 대피할까, 옥상으로 대피할까?

【판단보충】

① 화재층(○층)을 정확히 인지했는가?

- ▶ 화재층을 다시 확인한다.

② 화재대피 안내방송이 계속 들리는가?

- ▶ 안내방송 내용을 정확히 들으면서 대피한다.

(참고) 대피방송은 대피자의 패닉(panic) 방지를 위해 반복 방송함

【중요참고】 화재 시 대피 안내방송 문안(예시)

알려드립니다. ○층 ○층(○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층 입주자 및 내방객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또는 ○층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이동)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용 승강기는 화재의 굴복 역할을 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위험이 우려되오니,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이상은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15.11.13.)

③ 자신이 판단한 대피방향이 맞는가?

- ▶ 틀렸으면, 바로 수정한다. (㉠ 지상 ㉡ 옥상 ㉢ 피난시설 활용)

- 비상벨 작동 / 연기 등 발견 : 자신의 위치(○층)보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난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대피방송이 없는 경우】 발코니, 계단창으로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판단보충】

① (세대 안) 발코니 창을 통해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 ▶ 건물 외부로 나오는 연기를 확인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② (대 피 층) 피난계단 창을 통해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 ▶ 피난계단을 내려오면서 연기를 확인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참고) 연기의 이동속도 : 수평 이동 0.5~1㎧, 수직 이동 2~3㎧, 계단실 이동 3~5㎧ ※ 보행속도 1~2㎧

【참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 주요성분 : 탄소(주성분), 이산화탄소(CO2), 시안화수소(HCN), 일산화탄소(CO) 등
- 위험요소 : 거주자 대피장애, 화재진압 장애, 유독가스 질식 위험 등
- 독성가스 허용농도
염화수소(HCL) 5ppm, 이산화황(SO2, 아황산가스) 5ppm,
시안화수소(HCN) 10ppm, 일산화탄소(CO) 50ppm, 이산화탄소(CO2) 5,000ppm

【심층판단】 연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지상 대피를 최우선으로 한다.

(참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대피자의 패닉(panic) 방지를 위해, '직상발화 우선 경보방식'으로 작동함(*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 대상)

(참고) 방재실에서 오작동으로 선 판단하여, 지구경종과 비상방송을 정지시킨 후 현장확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피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음

(참고) 대피방송이 없이 화재 비상벨만 울리는 경우, 거주자가 제대로 대피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오작동으로 인식하는 사례 등)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핵심어 지상, 방화문, 옥상, 옥상 출입문, 피난시설

- ① 최우선적으로,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보충】

㉠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대피를 지체했는가?

- ▶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 대피하면서,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심층판단】 화재를 진화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빨리 판단한다.

①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인가? ② 소화기 등이 바로 보이는가?
(주의) 소화기 사용(약 10~12초 방사) 후 진화되지 않으면, 즉시 대피한다.

㉡ 세대 현관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 정확히 닫고 대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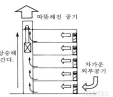
(참고) 문을 닫으면 화염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음

㉠ 엘리베이터(elevator, 승용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려고 하는가?

▶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원칙>

(참고)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화재 시 굴뚝 역할을 하여 연기질식 위험이 있음

[참고] 굴뚝효과(Stack Effect)



정의 :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데, 이를 '연돌효과(Chimney Effect)'라고도 함

문제 제 : 화재 시 1층에서 최상층으로 강한 통기력 발생, E.V문 오작동 발생 등

대책 : 계단실, E.V등 수직통로상에 공기유출구 설치, 아래층 공기유입 억제 등

참고 : 겨울철 (연돌현상) 여름철 (역연돌현상)

㉡ 피난계단 방화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정확히 닫고 대피한다.

(참고) 세대 현관문과 피난계단 방화문을 잘 닫지 않고 대피하는 경우, 화재 확대(통로) 제공 및 화재피해를 가중할 수 있음

㉢ 1층 공동 현관문(자동문)은 열리는가?

▶ 닫혀 열리지 않는 경우(구형 자동문) *신형 : 축전지로 60분간 정상 작동
 ① 자동문 상부(왼쪽 안) 전원버튼 OFF ②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밀어서(문 열리는 방향) 개방 ※ 정전 시는 별도 조치 없이 바로 밀어서 개방

㉣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한다.

[판단] 옥상이 가까운가?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판단보충]

㉤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리는가?

▶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 옥상이 가까우면 바로 대피한다.

(참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상 출입문'이 자동연동으로 개방되는 경우, 옥상 출입문 인근에 '수동개폐장치'가 있어 수동 개방이 가능함

㉥ 옥상 출입문을 열쇠로 열어야 하는가?

▶ 열쇠가 없으면, (절대) 옥상으로 대피하지 않는다.

(주의) 열려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대피는 매우 위험하다.

(참고) 정확한 판단 없는 막연한 옥상 대피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질식사고 발생 등의 사례가 있음

㉦ 옥상 출입문의 위치는 알고 있는가? (최상층? 바로 아래층?)

▶ 출입문 상단의 피난구 유도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피한다.

▶ 만약, 최상층에 도착했는데, 피난구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바로 아래층을 확인한다.

(주의) 피난구 유도등이 없는 문은 열려고,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

(참고) 옥상 최상층 기계실문(잠김)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하여 대피하지 못한 사고사례가 있음

㉧ 옥상 출입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옥상 출입문을 잘 닫아(잠금 금지*), 옥상 대피공간의 안전을 확보한다.

(*추가 대피자의 대피와 소방관의 구조활동을 위해 옥상 출입문은 절대 잠그지 말아야 한다)

㉨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대피(또는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보충]

㉩ 우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동별(구조별), 층별,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이 각각 다르다.

(참고) 공동주택별 건축허가 동의 시점에 따라 피난시설 적용이 각각 다름

㉪ 우리집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가?

▶ 사용법을 알고 있다.

(현장 상황에 맞게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바로 대피한다)

▶ 사용법을 모른다. (가장 선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참고) 세대 내 '대피공간'은 일반적으로 '다용도실' 형태로 된 경우가 많음

[참고] 피난시설의 종류(예시)



[참고] 고가굴절사다리차 화재진압 가능층수(아파트 기준)

- 고가사다리차 70m : 26층 - 고가사다리차 46m : 15층 - 굴절사다리차 35m, 36m : 11층	- 고가사다리차 52m, 53m : 17층 - 굴절사다리차 27m : 9층
---	--

※ 현장여건에 따라 가능층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인명구조 가능층수는 아님)

3. 피난시설 활용 대피(대기)방법 (※ 대상·층·세대별 시설이 다름)

※ '92년 7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 피난기구가 없음

- **경량칸막이 설치대상**(‘92.07.25. 이후)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석고보드 등)’를 파괴 후 이웃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화재가 우리집 계단라인 인가? / 이웃집 계단라인 이면 사용금지

【판단보충】

< 우리집 화재일 경우 >

- **현관문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 ▶ 불가하다. (가장 빨리 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이웃 세대로 대피한다)
- ① 이웃 세대(통과) → ② 우리집 계단(or 이웃집 계단) → ③ 지상 대피

< 다른집 화재일 경우 >

- **화재발생이 우리집 계단라인 인가, 이웃집 계단라인 인가?**

- ① **우리집 계단라인 이면,**

- ▶ 화재발생이 우리집 계단라인, 하층부인 경우

- ① 경량칸막이 → ② 이웃 세대(통과) → ③ 이웃집 계단 → ④ 지상 대피

- ▶ 화재발생이 우리집 계단라인, 상층부인 경우 : **사용금지**

- ② **이웃집 계단라인 이면,**

- ▶ 화재발생이 이웃집 계단라인인 경우(상하층부 관계없이) : **사용금지**

(주의) 이웃집 계단라인 화재 시, 반대로 이웃집에서 우리집으로 대피할 수 있으므로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동일평형, 동일계단을 사용하더라도 최외측 세대는 경량칸막이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참고】 경량칸막이 활용 대피 이미지(예시)



- **대피공간 설치대상**(‘05.12.02. 이후) : 세대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판단보충】

< 우리집 화재일 경우 >

- **현관문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 불가하다. (가장 빨리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방화문을 잘 닫는다)
 - ① 젖은 수건 등 활용, 연기흡입 최소화 ② 젖은 수건 등 활용, 실내 연기 유입 최대한 차단 ③ 물(수도시설) 이용, 열 차단 등 생존환경 최대한 확보
- (참고) 휴대폰이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 만약, 119 불통 시 가까운 사람에게 119구조 전달요청)

< 다른집 화재일 경우 >

- **계단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 불가하다. (가장 빨리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방화문을 잘 닫는다)
 - ①, ②, ③ 위와 동일하게 행동한다.
- (참고) 추가 안전확보를 위해 ‘화재용 마스크’ 구입 비치 및 사용법 교육

- **하향식 피난구 설치대상**(‘10.02.18. 이후)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하향식 피난구(피난사다리 등)’를 활용하여 아래층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화재층이 아래층인 경우 사용금지

【판단보충】

< 우리집 화재일 경우 >

- **현관문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 불가하다. (가장 빨리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내림식사다리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이용하여 아래층 세대로 대피한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 (※ 제품에 따라 이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음)**

- ① 손잡이 잡고 덮개를 연다 ② 레버를 밟아 아래덮개를 열고 레버를 밟아 사다리를 내린다 ③ 사다리를 이용 탈출한 후 줄을 당겨 덮개를 닫는다

- **승강식 피난기**

- ① 승강기판에 올라서서 안전손잡이를 잡는다 ② 기동레버를 밟아 하강한다
- ③ 아래층에 도달하면 바닥으로 내려선다

< 다른집 화재일 경우 >

● 계단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 불가능하다. (가장 빨리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내림식사다리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사용하여 아래층 세대로 대피한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 (※ 제품에 따라 이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음)

- ①, ②, ③ 위와 동일하게 행동한다.

● 승강식 피난기

- ①, ②, ③ 위와 동일하게 행동한다.

(참고) 내림식사다리는 대피 후 덮개를 반드시 닫고, 화재층이 하층부인 경우는 '하향식 피난구' 사용금지(상부층으로 화재 확대위험이 있음)

● 완강기 설치대상('92.07.28. 이후, 3~10층) : 세대 발코니 또는 대피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를 활용하여 지상으로 비상대피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대피상황이 위급한 경우 사용

[판단보충]

< 우리집 화재일 경우 >

● 현관문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 불가능하다. (가장 빨리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완강기를 사용하여 지상으로 비상대피한다)
- 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나사를 잠근다 ②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아래로 던진다 ③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④ 벽을 손으로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간다

< 다른집 화재일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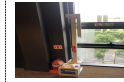
● 계단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 불가능하다. (가장 빨리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완강기를 사용하여 지상으로 비상대피한다)

- ①, ②, ③ 위와 동일하게 행동한다.

(참고) 완강기는 부주의한 사용 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1차 대피상황이 위급한 경우에 사용, 1회 대피 시 1인 이상 사용금지

[참고] 완강기(예시)



- 주요구성 : 고리(후크), 속도조절기(완강기 본체), 벨트, 릴(로프:줄), 지지대
- 주의사항 : 건물 높이에 적합한 로프 길이 확보(확인)
(최대하중) '12년 이전 100kg, 현재 150kg ※ 초과하중 사용금지
- 차 이 점 : (완강기) 연속사용 가능, (간이완강기) 연속사용 불가

4. 화재대피 후 준수사항

핵심어 신고, 재 진입금지

- 모든 인원이 대피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피 후에는 절대로 화재 발생 건물 안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미리 약속한 장소로 대피한 후 보이지 않는 인원이 있으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정확한 내용을 빨리 알린다.
(주의) 귀중품, 반려견(묘) 등을 가져오려고 다시 진입하는 사례가 있음
- 대피 후에는 대피자 인적사항(동호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소방현장지휘소 등에 알리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현장통제에 따른다.
- 안내 : 이재민 발생 시 시·군청에서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교육)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화재 등 재난 시 대피자 '집결지' 사전지정 운영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내 일정 장소 등)

3. 공동주택(29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핵심어 대피 안내방송, 지상, 연기, 창

- **화재대피 안내방송** : 화재층(○층) 위치를 정확히 듣고, 자신의 위치(화재 상부층, 하부층)를 판단 후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금 몇 층에 있는가? / 지상으로 대피할까, 옥상으로 대피할까?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3) 참조

- **비상벨 작동 / 연기 등 발견** : 자신의 위치(○층)보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난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대피방송이 없는 경우] 발코니, 계단창으로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3, 14) 참조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핵심어 지상, 방화문, 옥상, 옥상 출입문, 피난시설

- ① 최우선적으로,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4, 15) 참조
- ②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한다.
[판단] 옥상이 가까운가?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5, 16) 참조
- ③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대피(또는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보충]

㉠ 우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동별(구조별), 층별,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이 각각 다르다.
(참고) 공동주택별 건축허가 동의 시점에 따라 피난시설 적용이 각각 다름

㉡ **우리집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제연설비?

㉢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가?**

▶ 사용법을 알고 있다.

(현장 상황에 맞게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바로 대피한다)

▶ 사용법을 모른다. (가장 선 대피공간 또는 제연설비로 대피한다)

(참고) 세대 내 '대피공간'은 일반적으로 '다용도실' 형태로 된 경우가 많음

[참고] 피난시설의 종류(예시)



3. 피난시설 활용 대피(대기)방법 (※ 대상·층·세대별 시설이 다름)

※ '92년 7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 피난기구가 없음

핵심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제연설비

- **경량칸막이 설치대상('92.07.25. 이후)**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석고보드 등)'를 파괴 후 이웃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화재가 우리집 계단라인 인가? / 이웃집 계단라인 이면 사용금지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7) 참조

- **대피공간 설치대상('05.12.02. 이후)** : 세대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7, 18) 참조

- **하향식 피난구 설치대상('10.02.18. 이후)**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하향식 피난구(피난사다리 등)'를 활용하여 아래층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화재층이 아래층인 경우 사용금지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8, 19) 참조

- **제연설비 설치대상(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 승강장 또는 부속실 내 ‘급기덤퍼’를 작동(*미작동 시)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한가? / 계단 대피중 연기로 대피가 곤란할 때*

- * 계단 대피중 연기가 계단실로 올라오는 경우, 무리한 대피는 위험하므로, 인접해 있는 승강장(or 부속실)의 제연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세대로 피난× : 현관문 자동잠김 / 계단으로 피난× : 연기질식 위험)

【판단보충】

① 계단으로 대피 가능한가, 불가한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 불가하다. (가장 빨리 승강장 방화문과 세대 현관문 또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방화문을 잘 닫고, 급기덤퍼가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② 급기덤퍼가 작동하는가, 안하는가?

- ▶ 작동하면, 실내 대기한다.
- ▶ 작동하지 않으면, 급기덤퍼 상단의 기동스위치를 누른다.

③ 기동스위치를 눌러도 급기덤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 ▶ 빨리 세대로 다시 들어가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참고) 제연설비는 전실 차압유지(연기유입 방지)가 중요하므로 승강장 방화문 및 세대 현관문, 부속실 방화문을 잘 닫아야 함

④ 전실 대피, 대기 중 급기덤퍼에서 연기가 나오는 경우,

- ▶ 빨리 세대로 다시 들어가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주의) 급기덤퍼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는 경우, 빨리 대피장소를 이탈해야 한다.
(참고) 급기송풍기의 ‘외기취입구’로 화재발생 연기유입 및 급·배기덕트 중 후렉시블(flexible) 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어, 전실로 확산된 사례가 있음

【참고】 공동주택의 제연설비[화재안전기준(NFSC 501A)]



- 제연방식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 적합기준
 - ① 제연구역에 옥외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이외 옥내보다 높게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함으로써,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 ③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 차압 40Pa 이상 / 비상전원 20분 이상(29층 이하)

4. 화재대피 후 준수사항

핵심어 신고, 재 진입금지

- 모든 인원이 대피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피 후에는 절대로 화재 발생 건물 안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20) 참조

- 대피 후에는 대피자 인적사항(동호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소방현장지휘소 등에 알리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현장통제에 따른다.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20) 참조

4. 공동주택(30~49층)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핵심어 대피 안내방송, 지상, 피난안전구역, 연기, 창

- **화재대피 안내방송** : 화재층(○층) 위치를 정확히 듣고, 자신의 위치 (화재 상부층, 하부층)를 판단 후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금 몇 층에 있는가?

/ 지상으로 대피할까,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까?

【판단보충】

① 화재층(○층)을 정확히 인지했는가?

▶ 화재층을 다시 확인한다.

② 화재대피 안내방송이 계속 들리는가?

▶ 안내방송 내용을 정확히 들으면서 대피한다.

(참고) 대피방송은 대피자의 패닉(panic) 방지를 위해 반복 방송함

【중요참고】 화재 시 대피 안내방송 문안(예시)

알려드립니다. ○층 ○층(○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층 입주자 및 내방객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또는 ○층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이동)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용 승강기는 화재의 굴복 역할을 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위험이 우려되오니,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이상은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15.11.13.)

③ 자신이 판단한 대피방향이 맞는가?

▶ 틀렸으면, 바로 수정한다. (㉠ 지상 ㉡ 피난안전구역 ㉢ 옥상
㉣ 피난시설 활용)

- **비상벨 작동 / 연기 등 발견** : 자신의 위치(○층)보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난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 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대피방송이 없는 경우】 발코니, 계단 창으로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판단보충】

① (세대 안) 발코니 창을 통해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 건물 외부로 나오는 연기를 확인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② (대 피 중) 피난계단 창을 통해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 피난계단을 내려오면서 연기를 확인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참고) 연기의 이동속도 : 수평 이동 0.5~1m/s, 수직 이동 2~3m/s, 계단실 이동 3~5m/s ※ 보행속도 1~2m/s

【심층판단】 연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지상 대피를 최우선으로 한다.

(참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대피자의 패닉(panic) 방지를 위해, '직상발화 우선 경보방식'으로 작동함(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 대상)

(참고) 방재실에서 오작동으로 선 판단하여, 지구경종과 비상방송을 정지시킨 후 현장확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피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음

【중요참고】 피난유도 우선순위 결정 및 비상방송(대상/시기/방법 등 선택)

순 위	지상층 재난발생	지하층 재난발생
1순위	재난발생층 피난유도	재난발생 지하층 피난유도
2순위	재난발생 직상층, 직하층 피난유도	재난발생 지하층의 직하층 피난유도
3순위	재난발생층의 최상층부터 아래로 피난유도	재난발생 지하층의 직상층 피난유도

*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15.11.13.)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핵심어 지상, 피난안전구역, 옥상, 피난시설

- ① **최우선적으로, 직통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참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건축법 제50조의2, 시행령 제34조)

【판단보충】

㉠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대피를 지체했는가?

▶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 대피하면서,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심층판단】 화재를 진화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빨리 판단한다.

①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인가? ② 소화기 등이 바로 보이는가?

(주의) 소화기 사용(약 10~12초 방사) 후 진화되지 않으면, 즉시 대피한다.

B 세대 현관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정확히 닫고 대피한다.

(참고) 문을 닫으면 화염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음

C 엘리베이터(elevator, 승용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려는가?

▶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원칙>

▶ 화재 시 승강로가 연도(煙道)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지.

<지침>

*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15.11.13.)

(참고)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화재 시 굴뚝 역할을 하여 연기질식 위험이 있음

[중요참고] 승용 승강기 외 추가설치(화재 등 재난 시 구분사용)

- 31m 초과 건축물 : **비상용 승강기**(화재 시 소화 및 구조용)
-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 **피난용 승강기**(화재 등 재난 시 장애인, 노인 등 피난용)
 - (평상 시) 승용 승강기로 사용 / (재난 시) 대상을 종합방재실에서 통제 운용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21. 3월말 기준) : **피난용 승강기 총 89대** 운용중(전국)

D 피난계단 방화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정확히 닫고 대피한다.

(참고) 세대 현관문과 피난계단 방화문을 잘 닫지 않고 대피하는 경우, 화재 확대(통로) 제공 및 화재피해를 가중할 수 있음

E 1층 공동 현관문(자동문)은 열리는가?

▶ 닫혀 열리지 않는 경우(구형 자동문) *신형 : 축전지로 60분간 정상 작동

- ① 자동문 상부(왼쪽 안) 전원버튼 OFF ②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밀어서(문 열리는 방향) 개방 ※ 정전 시는 별도 조치 없이 바로 밀어서 개방

(참고) 자신이 사는 위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1층까지 가는 경로(계단)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함

2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안전구역(20층~30층 사이)으로 대피한다.

[판단] 피난안전구역이 가까운가?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이용이 곤란한가?

[판단보충]

● 지금 몇 층에 있는가? 직통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이용이 곤란한가?

④ 화재층보다 하부층이면, (계단 이용 가능)

▶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한다.

B 화재층보다 상부층이면,

① 피난안전구역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20층~30층 사이)

② 피난안전구역이 가까운가? 도달 소요시간은?

▶ 가까우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

③ 피난안전구역으로 가는 경로는? (직통계단 이용, 특별피난계단 이용)

(참고)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층)를 확실히 숙지하고, 자신이 사는 위치(○층)에서 가는 경로(계단)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함

[참고] 피난안전구역(초고층재난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 설치대상 :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초고층재난관리법)
 - * 초고층 건축물(50층, 200m 이상) :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설치기준 :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 소방시설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SP, 자탐설비,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휴대용),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 지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 후 구조 때까지 대기한다.

[판단] 옥상이 가까운가?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판단보충]

A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리는가?

▶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 옥상이 가까우면 바로 대피한다.

(참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상 출입문'이 자동연동으로 개방되는 경우, 옥상 출입문 인근에 '수동개폐장치'가 있어 수동 개방이 가능함

B 옥상 출입문의 위치는 알고 있는가? (최상층? 바로 아래층?)

▶ 출입문 상단의 피난구 유도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피한다.

▶ 만약, 최상층에 도착했는데, 피난구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바로 아래층을 확인한다.

(주의) 피난구 유도등이 없는 문은 열려고,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

(참고) 옥상 최상층 기계실문(잠김)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하여 대피하지 못한 사고사례가 있음

C 옥상 출입문은 잘 닫고 대피했는가?

▶ 옥상 출입문을 잘 닫아(잠금 금지*), 옥상 대피공간의 안전을 확보한다.

(*추가 대피자의 대피와 소방관의 구조활동을 위해 옥상 출입문은 절대 잠그지 말아야 한다)

- ① 옥상에 헬리포트 또는 구조공간(평지붕), 대피공간(경사지붕)이 있는가?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 헬리포트(heliport) 등이 있으면, 소방대원의 옥상 접근이 가능하므로, 옥상 대피를 적극 검토한다.
 ▶ 대피공간으로 대피 시 출입문(갑종방화문)을 잘 닫고 대피한다.
 (참고)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참고)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④ 지상 및 피난안전구역,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 시설**을 활용하여 대피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이용이 불가한가?

【판단보충】

- ① 우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동별(구조별), 층별,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이 각각 다르다.
 (참고) 공동주택별 건축허가 동의 시점에 따라 피난시설 적용이 각각 다름
- ② 우리집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대피공간? 제연설비?
- ③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가?
 ▶ 사용법을 알고 있다.
 (현장 상황에 맞게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바로 대피한다)
 ▶ 사용법을 모른다. (가장 원 대피공간 또는 제연설비로 대피한다)
 (참고) 세대 내 '대피공간'은 일반적으로 '다용도실' 형태로 된 경우가 많음

3. 피난시설 활용 대피(대기)방법

핵심어 대피공간, 제연설비, 급기댐퍼

- **대피공간 설치대상('05.12.02. 이후)** : 세대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한가?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17, 18) 참조

- **제연설비 설치대상(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 승강장 또는 부속실 내 '급기댐퍼'를 작동(*미작동 시)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한가? / 계단 대피중 연기로 대피가 곤란할 때

➡ 「3. 공동주택(29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23) 참조

4. 화재대피 후 준수사항

핵심어 신고, 재 진입금지

- 모든 인원이 대피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피 후에는 절대로 화재 발생 건물 안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20) 참조
- 대피 후에는 대피자 인적사항(동호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소방현장지휘소 등에 알리고,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현장통제에 따른다.
 ➡ 「2.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내용(P 20) 참조

붙임

공동주택 화재 대피방법(4종) 홍보안내문

공동주택(4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 **타는 냄새, 연기, 화염 등 인지** : 화재발생을 주변에 큰소리로 알리고, 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상으로 대피할까? 옥상으로 대피할까?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 ① **최우선적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1층 필로티(주차장) 화재는 가장 빨리 대피해야 한다.
- ②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한다.**
【판단】 옥상 대피가 가능한가?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 ③ **뜨거운 화염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 내 창문이 있는 곳으로 임시대피 후 구조 때까지 대기(또는 비상탈출)한다.**
【판단】 화염이 보이는가, 연기가 짙고 뜨거운가?



3. 세대 내 대피(비상탈출)방법 (* 법적 피난시설이 없음)

이웃집, 1층 필로티(주차장) 화재인 경우

- ① **젖은 수건 등으로 코, 입을 가린다** : 연기(유독가스)로부터 신체보호
- ② **현관문, 창문, 방문을 닫는다** : 화재확대 방지 및 긴급대피공간 확보
- ③ **화염으로부터 멀리 창문이 있는 곳으로 대피 후, 창문을 열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생존환경 및 비상탈출공간 확보
【행동】 구조 때까지 열, 연기유입 최대한 차단 조치 / 비상탈출 준비

우리집 화재인 경우

- ① **젖은 수건 등으로 코, 입을 가리고, 자신의 방문(또는 불이 번지지 않은 방으로 대피 후)을 빨리 닫는다** : 신체보호 및 긴급대피공간 확보
- ② **창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 후, 창문을 열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 생존환경 및 비상탈출공간 확보
【행동】 1. 구조 때까지 열, 연기유입 최대한 차단 조치
 2. 대피상황이 매우 위급한 경우, 로프, 커튼 등 활용 비상탈출 실시

공동주택(15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 **화재대피 안내방송** : 화재층(○층) 위치를 정확히 듣고, 자신의 위치(화재 상부층, 하부층)를 판단 후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금 몇 층에 있는가? / 지상으로 대피할까, 옥상으로 대피할까?
- **비상벨 작동 / 연기 등 발견** : 자신의 위치(○층)보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난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대피방송이 없는 경우】 발코니, 계단창으로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 ① **최우선적으로,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 ②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한다.**
【판단】 옥상이 가까운가?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 ③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대피(또는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3. 피난시설 활용 대피(대기)방법 (* 대상·층·세대별 시설이 다름)

- **경량칸막이 설치대상**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이웃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화재가 우리집 계단라인 인가? / 이웃집 계단라인 이면 사용금지
- **대피공간 설치대상** : 세대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하향식 피난구 설치대상**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활용하여 **아래층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화재층이 아래층인 경우 사용금지
- **완강기 설치대상(3~10층)** : 세대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를 활용하여 **지상으로 비상대피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대피상황이 위급한 경우 사용



공동주택(29층 이하)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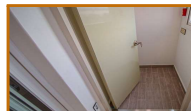
- **화재대피 안내방송** : 화재층(○층) 위치를 정확히 듣고, 자신의 위치(화재 상부층, 하부층)를 판단 후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금 몇 층에 있는가? / 지상으로 대피할까, 옥상으로 대피할까?
- **비상벨 작동 / 연기 등 발견** : 자신의 위치(○층)보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난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대피방송이 없는 경우】 발코니, 계단창으로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 ① 최우선적으로,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 ②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한다.**
【판단】 옥상이 가까운가?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 ③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대피(또는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3. 피난시설 활용 대피(대기)방법 (* 대상·층·세대별 시설이 다름)

- **경량칸막이 설치대상**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이웃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화재가 우리집 계단라인 인가? / 이웃집 계단라인 이면 사용금지
- **대피공간 설치대상** : 세대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하향식 피난구 설치대상**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활용하여 **아래층 세대**로 대피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화재층이 아래층인 경우 사용금지
- **제연설비 설치대상** : 엘리베이터 **승강장** 또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내 ‘급기댐퍼’를 작동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계단 대피중 연기로 대피가 곤란할 때



공동주택(30~49층) 화재 대피방법

1. 화재발생 인지 시 행동방법

- **화재대피 안내방송** : 화재층(○층) 위치를 정확히 듣고, 자신의 위치(화재 상부층, 하부층)를 판단 후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판단】 지금 몇 층에 있는가? / 지상으로 대피할까,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까?
- **비상벨 작동 / 연기 등 발견** : 자신의 위치(○층)보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난계단의 연기상태와 방향 등을 확인하면서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대피방송이 없는 경우】 발코니, 계단창으로 화재층을 직접 확인한다.

2. 화재발생 시 기본 대피방법

- ① 최우선적으로, 직통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빨리 대피한다.**
- ② 지상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안전구역(20층~30층 사이)**으로 대피한다.
【판단】 피난안전구역이 가까운가?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이용이 곤란한가?
- ③ 지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옥상으로 대피 후 구조 때까지 대기**한다.
【판단】 옥상이 가까운가?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은 열리는가?
- ④ 지상 및 피난안전구역,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피난시설**을 활용하여 대피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이용이 불가능한가?



3. 피난시설 활용 대피(대기)방법

- **대피공간 설치대상** : 세대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제연설비 설치대상** : 엘리베이터 **승강장** 또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내 ‘급기댐퍼’를 작동 후 **구조 때까지 실내 대기**한다.
【판단】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한가? / 계단 대피중 연기로 대피가 곤란할 때



공동주택 화재 대피방법(4종) 교육안내서

- 발행일 2021년 ○월
 - 발행인 ○○○
 - 발행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예방대책팀, 생활안전팀)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
(전화) 031-849-4022
-

